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교육)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6. 21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- 제 목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4. 6. 21. ~ 2024. 7. 5. (14일간)
- 근거법규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교육), 제47조(과태료)
- 게시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, 전국 시군구 게시판
- 공고대상자: 김** 외 2명

연번	업종	업소명	대표자	영업소 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
1	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	패션퀵	김**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60-9, C동 3층 307호 (을지로6가)	2022년도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안전위생 교육 미이수	과태료 20만원 (기한 내 납부시 16만원)
2	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	헤베샵 (hebe shop)	강**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25, 1층 (광희동1가)		

6. 의견제출

- 가. 제출처: 서울 중구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(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, 중구보건소 4층)
나. 의견제출기한: 2024. 7. 19.(금)

7. 유의사항

- 가.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%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
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
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는 서울 중구
보건위생과(02-3396-5664)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